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707
----------	-------

발의연월일 : 2023. 12. 1.

찬성자 : 유의동 · 서일준 · 박성민

김 웅 · 金炳旭 · 이인선

정희용 · 강대식 · 강기윤

윤한홍 · 한기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국민경제, 고용안정,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함)이 신설되어 총 40조 원이 조성되었으나 이후 2년간 지원 실적은 이 중 2% 정도(약 8천억 원)에 그침. 이처럼 지원 실적이 낮은 것은 7% 대의 고금리 대출 지원이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지금, 배터리 · 반도체 · 바이오 등 성장성 있는 첨단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국의 공격적 투자 지원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

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되, 기존의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자금 지원 시 완화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이하 “전략산업기업”이라 함)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이하 “전략산업지원기금”이라 함)을 설치함(안 제29조의7 신설).
- 나. 전략산업지원기금은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하며, 정부가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8 신설).
- 다. 전략산업지원기금은 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해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자금 대출 시 금리는 국채 이자율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9 신설).
- 라. 전략산업지원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전략산업지원기금운

용심의회를 둠(안 제29조의10 신설).

마.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출자한 전략산업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0조).

바.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중과실 없이 전략산업지원기
금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문책 등을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함(안 제41조).

사.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전략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관계 법령의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아. 전략산업지원기금의 운용은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금융안정기금(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을 “금융안정기금(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의7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이하 “전략산업지원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10에 따른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제18조제2항제7호 중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기간산업안정기금·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3호 중 “회사등”을 “기간산업기업지원목적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말하며, 이하 “자금지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제29조의4부터 제29조의6까지에서 같다”로 한다.

제29조의4제2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회사등”을 각각 “기간산업기업지원목적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산업은행의”를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 중 “회사등”을 각각 “기간산업기업지원목적회사등”으로 한다.

4의2.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의 전출

제3장의3(제29조의7부터 제29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

제29조의7(전략산업지원기금의 설치) ①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제2항에 따른 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보

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업종

제29조의8(전략산업지원기금의 재원) ① 전략산업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전략산업기업 및 제29조의9제2항제2호의 전략산업기업지원목적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5. 전략산업지원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한국산업은행은 전략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9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제29조의9제7항·제8항 및 제29조의10에서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전략산업지원기금의 부담으로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에 관하여는 제29조의3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은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본다.

제29조의9(전략산업지원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등) ① 전략산업지원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운용한다.

② 전략산업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전략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 자금의 대출.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 규모의 범위
에서 대출 금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채 이자
율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인수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사. 제2호의 전략산업기업지원목적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
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전략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
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
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전략산업기업지원목적회
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5. 전략산업지원기금의 운용비용

③ 한국산업은행은 전략산업지원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제29조의10에 따른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이하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산업은행은 전략산업지원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한국산업은행과 전략산업기업지원목적회사등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전략산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한국산업은행과 전략산업기업지원목적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전략산업기업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

다.

⑦ 한국산업은행은 전략산업지원기금의 부담으로 전략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자금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⑧ 한국산업은행은 전략산업지원기금의 부담으로 전략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의10(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전략산업지원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전략산업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본문 중 “기간산업기업”을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9에 따라 출자한 전략산업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29조의4”를 “제

29조의4 또는 제29조의9”로 한다.

제41조 중 “제3장의2”를 “제3장의2 또는 제3장의3”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전략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3장의2”를 “제3장의2 또는 제3장의3”으로, “기간산업기업”을 “기간산업기업 또는 전략산업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장의2”를 각각 “제3장의2 또는 제3장의3”으로, “처분하는”을 “처분하거나 전략산업기업의 위임에 따라 전략산업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의 운용 기간)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의 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정관) ①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략)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u>금융안정기금(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u> 및 제29조의2에 따른 <u>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u> 에 관한 사항 10. ~ 12. (생략) ② (생략)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제29조에 따른 <u>기금운용심의회</u> 의 위원 및 제29조의6에 따른 <u>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u> 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제6조(정관) ① ----- ----- -----. 1. ~ 8. (현행과 같음) 9. ----- ----- <u>금융안정기금(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u> , 제29조의2에 따른 <u>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u> 및 제29조의7에 따른 <u>국가철단전략산업지원기금(이하 “전략산업지원기금”이라 한다)</u> ----- ----- 10.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 ----- <u>기금운용심의회</u> 의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u>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u> 의 위원 및 제29조의10에 따른 전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u>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u> ----- ----- -----.
제18조(업무) ① (생략)	제18조(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금융안정기금· <u>기간산업안정기금</u> 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7. ----- <u>기간산업안정기금·전략산업지원기금</u> ----- -----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①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4제2항제2호의 <u>회사</u>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3. ----- ----- ----- <u>기간산업기업지원목적회사등</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4	② ----- -----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자금지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 4. (생략)

③ · ④ (생략)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등) ① (생략)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 ~ 바. (생략)

사. 제2호의 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

말한다. 이하 제29조의4부터 제29조의6까지에서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기간산업기업지원목적회사등-----

2. -----

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
(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
산 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
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
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출자·투자나 제1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
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
대비용

3.·4. (생략)

<신설>

5. (생략)

③ (생략)

④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
정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⑤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
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3.·4. (현행과 같음)

4의2.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의
전출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한국산업은행
이 운용하는 다른-----
-----.

⑤ -----기간산업기
업지원목적회사등-----

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

⑥ -----기간산업기업지원목적회사등-----

-----.

제3장의3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 기금

제29조의7(전략산업지원기금의
설치) ①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제2항에 따른 전략산업기업에 대한

<신 설>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업종

제29조의8(전략산업지원기금의 재원) ① 전략산업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전략산업지원

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전략산업기업 및 제29조의9제2항제2호의 전략산업기업지원목적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5. 전략산업지원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한국산업은행은 전략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9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제29조의9제7항·제8항 및 제29조의10에서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전략산업지원기금의 부담으로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에 관하여는 제29조의3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 설>

“채권”은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본다.

제29조의9(전략산업지원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등) ① 전략산업지원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운용한다.

② 전략산업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전략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 자금의 대출.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 규모의 범위에서 대출 금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채 이자율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인수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사. 제2호의 전략산업기업지
원목적회사등에 의한 가목
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전략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
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
(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
산 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
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
구(이하 “전략산업기업지원목
적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
여 출자·투자나 제1호 가목
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으로 지
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전략
산업지원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5. 전략산업지원기금의 운용비
용

③ 한국산업은행은 전략산업지
원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제29조의10에 따른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이하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산업은행은 전략산업지원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한국산업은행과 전략산업기업지원목적회사등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전략산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신 설>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한국산업은행과 전략산업기업지원목적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전략산업기업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한국산업은행은 전략산업지원기금의 부담으로 전략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자금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⑧ 한국산업은행은 전략산업지원기금의 부담으로 전략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의10(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전략산업지원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29조의4

한국산업은행에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전략산업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9에 따라 출자한 전략산업기업-----

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장의2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
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문
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
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법」 제
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
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
다.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9-

제41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

-----제3장의2 또는 제3장의3-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

경우 또는 제3장의3에 따른 자
금지원으로 전략산업기업에 출
자하는 경우-----

② 제3상의2에 따른 자금지원
으로 기간산업기업으로부터 지
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
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
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
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
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
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제3장의2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제3장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산업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② 제3장의2 또는 제3장의3-----기간산업기
업 또는 전략산업기업-----

③ -----제3장의2
또는 제3장의3-----
-----제3
장의2 또는 제3장의3-----
-----처분하거나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u>전략산업기업의 위임에 따라</u> <u>전략산업기업의 자산을 처분하</u> <u>는</u>----- ----- ----- ----- ----- -----.
---	---